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지식산업 육성의 올바른 방향

<본회 생활전자과>

정부에서는 지난 8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복제기기(복사, 녹화, 녹음)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사적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 및 매체 생산업체에 제품 생산가의 일정액을 복제기기 제조자로부터 징수하여 사적복제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우리의 목전에 와 있는 21세기가 멀티미디어 정보화시대로 통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식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매우 적절하다

[사적복제보상금제 관련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

- 사적복제보상금 부과대상 : 디지털 녹음, 녹화기기 및 매체
- 부과율 : 최초 배포가액의 2/100 이내

현행법	개정(안)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①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u>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	② <u>저작권자 및 저작권접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를 위해 제조되는 복제기기 또는 매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 녹음·녹화기기 또는 매체를 국내에 수입 및 배포하거나 국내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자에게 이러한 기기 또는 매체의 최초 배포가액의 2/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u>
	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u>
	④ <u>단체의 지정, 보상금의 청구절차·관리 및 분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고 본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내용을 보면 법리적 합리성이나 지식산업을 둘러싼 연관 산업간의 유기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를 통해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지식산업 육성을 대전제로 사적복제로 인한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안이 어떤 것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1.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

첫째, 동일 법상에서 모순 발생

현행 저작권법 제22조 내지 제33조는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하여 문화창달을 촉진하고자 저작권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법 제27조의 경우도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기기 및 매체에 부과금을 징수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사적복제에 대해서도 저작권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행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저작물의 무상 사용권에 관한 규정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

사적복제보상금제의 근간은 소비자가 복제기기를 이용해 사적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사적복제의 당사자가 아닌 복제기기 제조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적의 경우 책에 저자의 저작권 및 저작물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세를 내야하지만 복제기기의 경우에는 기기 자체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기로 인해 저작권을 침

해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사적복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합당하다면 복제기기의 작동을 가능케하는 전기 생산업체나 전력 배송 관련 업체에 사적복제부담금을 부과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사적복제보상금 대상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디지털 복제기기는 현재 시장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품목으로, 미래에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하에 사적복제보상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기업의 준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정책에 역행

법률적인 의미에서 사용료는 어떠한 권리를 사용하는데 지급하는 대가이며, 복제기기 제조사가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사적복제보상금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님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사적복제보상금은 복제기기나 기재에 의해 저작물이 사적으로 복제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근거로 저작권의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범위의 기자재에 대하여 일률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준조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94년과 '97년 사이에 5백99개 상장사(금융업 제외)가 낸 준조세는 약 8조2천6백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중 상장사의 경상이익 총액인 23조7천억원의 35%, 연구개발비 16조 9천2백억원의 49%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같이 방대한 준조세가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보고 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준조세인 사적복제부담금 제도를 신설하려 하는 것은 정부의 준조세 부담 완화정책에 정면 역행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저작권자에 대한 이중 보상

현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은 개별적, 구체적 저작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이미 받고 있으나 동 보상금제도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경우, 이는 저작권자가 이중 보상을 받게되는 결과가 된다. 즉 일부의 저작권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고 자신의 저작권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의해 또 다시 보상을 받을 경우, 이미 개별적 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한 사용자가 복제기기를 구입할 때 또 다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 저작권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대다수 선의의 소비자들의 부담 가중

사적복제보상금제가 시행되어 복제기기에 일정율의 보상금이 부과될 경우 제조사로서는 동 제도의 취지대로 보상금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 증가 및 물가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녹음, 녹화기기 등 복제기기가 갖고 있는 복제와 재생 기능 중 복제기능을 사용하는 비율이 10%안팎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10%의 복제가능성을 전제로 복제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일정율의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대다수 선의의 소비자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정부의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육성정책 과도 배치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의 확산으로 가전, 컴퓨터, 반도체, 통신, 방송 등의 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등장한 디지털정보가전산업은 새로운 개념의 제품과 신규 시장을 창출하며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

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을 가속화하고 21세기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D-TV 등 정보가전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01년부터 실시키로 하는 등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가전업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켜 기술개발 투자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디지털정보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일곱째, 사적복제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

실사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도 입안에 앞서 사적복제행위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 또 사적복제행위의 순기능과 손실에 대한 분석 등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사적복제행위로 인한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까지도 병행되어야만 제도로서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작업이 없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외국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2. 전자산업에 대한 파급 영향

첫째,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발전기반 약화

정보가전시대가 본격화되면서 DSP(Digital Signal



Processor), AC-3, 영상압축기술(MPEG), 홈 오토메이선 시스템 관련 네트워킹기술(IEEE-1394)등 새로운 기술들이 핵심기술로 등장하였고 기술발전 속도 역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핵심기술이 디지털 정보가전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개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업체에서도 정부의 지원하에 '90년대 초부터 디지털 정보가전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97년 말 외환위기로 전자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98년 들어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세로 반전되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업계에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할 경우 업계의 기술개발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디지털 정보가전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디지털관련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적기에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발전을 주도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2000년대 초반이나 국내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보상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디지털 정보가전산업의 발전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전자업계의 경영부담 가중

사적복제보상금을 전자업계에 부과할 경우 제조사는 이를 해당 제품가격에 반영하거나 자체적인

원가요소로 흡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유통시장 개방 및 수입선다변화제 폐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가격의 상승은 바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내수판매 위축,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또한 복제보상금을 기존의 부과금처럼 원가요소로 자체 해결한다 하더라도 역시 매출원가 상승을 유도하여, 결국 판매이익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똑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셋째, 수출 경쟁력 약화

동 제도의 도입으로 내수판매분의 이익 기여도가 낮아지면 해당 업체는 목표 이익 달성을 위해 해외 수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수출가격 인상은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수출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통상마찰 초래 우려

반덤핑제도는 자국내 판매금액과 해당국의 수출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정 무역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덤핑 판정시 부과금 등 간접세를 차감한 후 국내 판매금액과 수출금액을 비교한다고는 하나, 이는 반덤핑 피제소후 절차이기 때문에 복제 보상금을 국내 판매가에 전가할 경우 반덤핑 제소 등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전자산업 연도별 투자 현황]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투자액(억원)	10,500	12,163	15,716	19,688	24,586	29,235	33,558	30,974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산업기술진흥협회



3. 외국의 사례

1) 유럽

1965년 독일이 사적복제보상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현재는 17개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영국은 미도입)

부과금 대상 품목별로 보면 녹음/녹화기기 및 녹음/녹화테이프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5개국이며 나머지는 녹음/녹화용 테이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전자제품 수요중 수입비중(40~50%)이 높은 국가들로 자국산업 보호와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전후의 수급 구조를 비교해 보면 수입/수요 비율은 상승한 반면, 수출/생산 비율이 감소한 국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 도입이 전자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미국, 일본

전세계 영화, 음악 저작물의 최대 생산국인 미국, 일본은 70년대 말 사적복제보상금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자국의 산업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듭해 오다 '93년부터 디지털 복제기기 및 매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미국 : 디지털 녹음기기, 일본 : 디지털 녹음/녹화기기 및 매체)

그러나 최근들어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녹화 및 녹음기기 개발시 복제방지 및 저작권료 징수시스템(Billing System), 그리고 복제 관리기술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일의 저작권자들은 사적복제보상금에 의한 일률적인 보상금보다 복제방지기술 및 저작권료징수시스템을 통한 저작물 가치에 따른 저작권료 책정하고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을 선호

함으로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사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법리적 타당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경영부담은 물론 대다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적복제보상금은 준조세로 기업의 준조세 부담완화와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도 상충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전자업체의 기술개발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 정보가전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동 제도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폐해의 효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적복제보상금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량의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디지털 복제기기에 의한 대량의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현재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사적복제를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저작권자와 제조업체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사적복제에 대한 폐해를 크게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컨텐츠(Contents)산업 등 지식산업은 디지털정보가전산업과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 발전해야 하며 복제방지기술의 개발, 사적복제 요금징수시스템(Billing System)구축 등 보다 항구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지식산업과 디지털 정보가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